#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129

발의연월일: 2024. 7. 23.

발 의 자 : 임오경 • 이기헌 • 김재원

박 정・한민수・박수현

임미애 · 강유정 · 윤후덕

서영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PC 및 모바일 기기와 이를 활용한 인터넷 사용이 대중화되고, 특히 사회적 관계 서비스(SNS) 등이 일반화되면서 메신저, 블로그, 커뮤니 티 등과 같은 SNS 이용이 활발해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매년 실시하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각종 연구에서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이 장애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타나지만, 장애인의 PC·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과 스마트 기기 보유율은 비장애인 대비 낮은 수준임.

고령층도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언급되고는 있지만, 급변하는 환경 속에 정보 격차를 겪는 경우가 많음.

현재 웹사이트와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성 관련 지침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을 위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접근성 항목에 대한 제공 업체의 준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 관계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접근성 준수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두고, 이와 함께 정부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나아가 삶의 질과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접근성을 보장하여야"를 "하고,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과이용의 편익 증진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
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	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
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	장) ①
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	
이 다음 각 호의 유·무선 정	
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	
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u>하고, 유·무선 정보</u>
	통신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도
	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
	<u>of</u>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②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u>이 경우 국가기관등</u>
	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u>자에게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u>
	능정보서비스 접근과 이용의 편
	익 증진에 필요한 재정적·기술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